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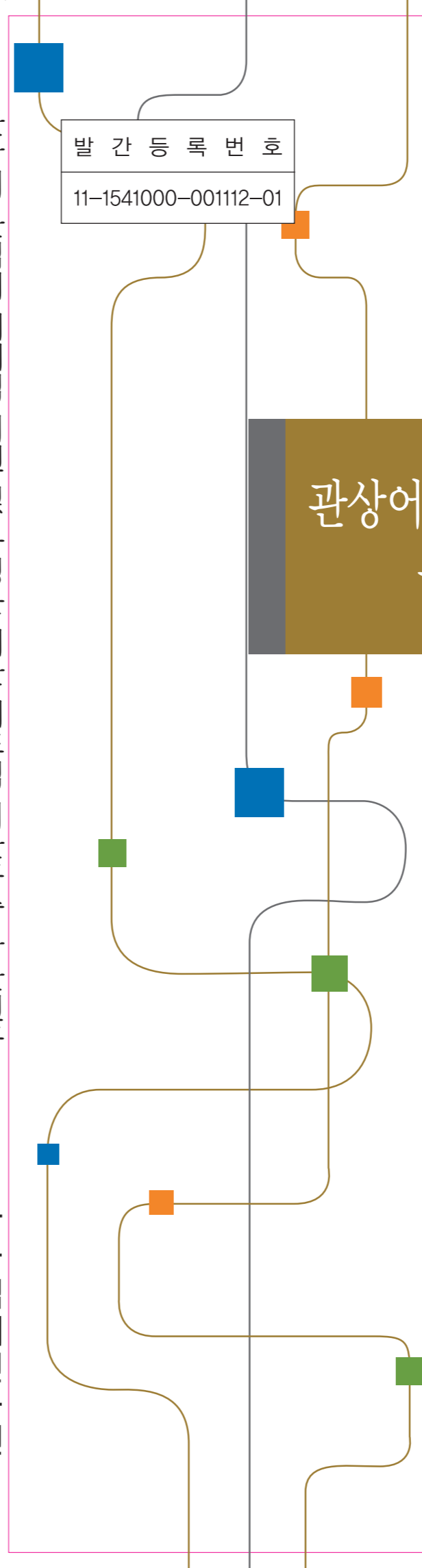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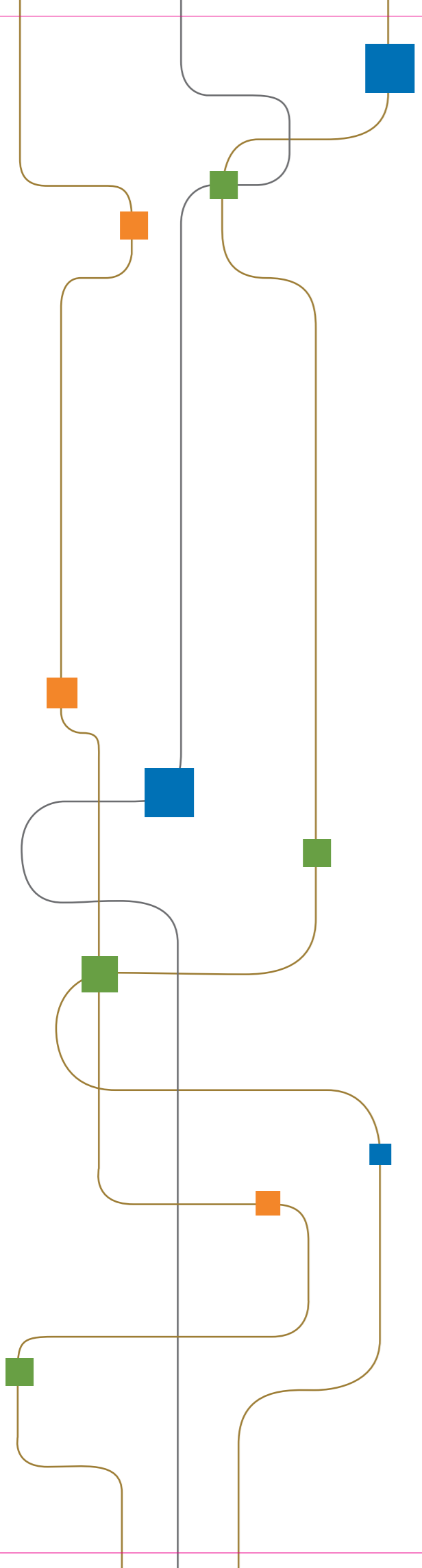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 보고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12-01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2011. 7.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12-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2011. 7.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7.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기 표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 민 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 영 기 (한국수산회 연구위원)

요약문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관상어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1. 4. 14 ~ 2011. 9. 9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5. 2(월) 15:00 - 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8. 4(목) 16:00 -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1. 9. 8(목) 16:00 -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 워크숍 개최

1. 일시 : 2011. 7. 27(수) 14:00-16: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관련 단체 의견조사

- 관상어협회 의견조사 : 2011. 6. 13,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양식업자 의견조사 : 2011. 6. 29,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수족관 사업자 의견조사 : 2011. 7. 4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수입업자 의견조사 : 2011. 8. 16 아쿠아라인 사무실

- 관상어용품 및 기자재 생산업자 의견조사 : 2011. 8. 17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유통업자 의견조사 : 2011. 8. 19 한국관상어협회 사무실

- 관상어양식업자 의견조사 : 2011. 8. 19 유니아쿠아 사무실

○ 현장조사

- AQUARAMA 2011, 2011.5.26-5.30 참관

- 경기권 일대 관상어양어장 방문, 2011. 8. 11(남양주시, 일산시, 김포시)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수산업의 가치창출 패러다임 전환

수산업의 가치창출 방식은 과거 1차 산업중심에서 향후 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수심에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희소한 어종의 생산기술을 개발·보유할 경우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식용위주의 수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선점을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약탈적 조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업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어장환경이 황폐화되고,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2)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지속가능성을 지닌 녹색생명산업

<표 녹색성장전략과 관상어산업>

녹색 성장 전략	관상어 산업의 특징
저 탄 소	○ 타 산업에 비해 탄소 발생 요구 수준이 낮은 저탄소 산업 * 주요 탄소 발생 요소 : 열대어 양식에 필요한 난방
친 환 경	○ 관상어 수조(어항)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수중 생태계를 재연하고 있어 자연·환경·생태계 친화적 속성을 지님
자원 절약	○ 자원투입보다는 신제품 개발·개량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 기반 산업
지속 가능성	○ 주로 양식을 통해 생산·유통되어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

3) 연관 범위가 넓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

연관일자리로서 수족관운영, 관상어 양식, 용품 제조, 도매 유통, 수출 및 수입, 질병 관리, 조경, 수족관 전시, 연구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민 여가 활동 및 취미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숙한 수산업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상어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정책적 이니시어티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연두업무보고 중 “수산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육성방안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였고, 관련 연구용역 시행한 바 있다.

*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수산과학원, '09.12 ~ '10.12)

* 2010년 하반기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상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발간(연구기간 : 2010.6.14.-2010.12.21)

정부는 2003년 섬진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 2008년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해양수산부)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관상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 수출 지원 내역 : ('08) 충북 1억 원 / ('09) 충북 0.7, 제주 0.35 / ('10) 충북 0.65, 제주 0.35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장기적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의 미약하였고, 목적과 수단의 종합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연구의 목적

수산업의 가치창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관상어산업이 지니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녹색생명산업 및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요

(1) 구 성

□ 5장 28개조와 부칙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제5조-제9조)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관상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장 관상어산업 육성(제10조-제25조)
 - 제10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1조(국내산 관상어의 육성)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지원)
 - 제13조(관상어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 제14조(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제1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제16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17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제19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20조(인증의 취소 등)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 제22조(자금 및 기술지원)
 - 제23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4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제25조(관상어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4장 보칙(제26조-제27조)
 - 제26조(보고·검사)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5장 벌칙(제28조)
 - 제28조(과태료)
- 부칙

(2) 제안이유

수산업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과 같은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상어산업은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식용위주의 수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선점을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식용위주의 수산업 내지 내수면양식업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구축되어 있어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양식·생산, 유통·판매되는 관상어의 양식과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유사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한 규제가 존재하여 국내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상어의 특수한 양식·생산, 유통체계와 소비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상어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관상어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3) 주요내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상어산업의 지원방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등 관상어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상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노후된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국가 등은 국내산 관상어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품종육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내산 관상어와 관련 상품의 수출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 및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5) 관상어산업의 유기적 결합과 유통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상어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상어산업단지조성체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관상어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산업단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 양식·생산업자에 대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7)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의 관상어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17
1.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17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추진체계 및 전략	19
제 2 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21
제 1 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21
1. 관상어 산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21
2.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22
3.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SWOT분석	24
제 2 절 관상어 산업 문제점 분석	27
1.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27
2. 국내 시장 및 수출 관련 현황 파악	28
제 3 절 세계 주요 국가의 관상어 산업 현황	32
1. 호 주	32
2. 싱가포르	50
3. 말레이시아	53
4. 일 본	53
제 3 장 관상어 산업 육성 관련 우리나라 유사 법제 검토	61
제 1 절 관상어 산업 육성관련 국내 유사 법제 검토	61
1.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61

2. 산업의 진흥·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61
3. 국내 관련 법률 중 관상어산업과 유사한 법제 검토	62
4. 정책적 시사점 도출	64
제 4 장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도입 타당성 분석	67
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67
2. 해당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67
제 5 장 법령(안)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71
제 1 절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71
1.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71
2. 관상어양식장 입지제한 관련 법률의 검토	81
3. 관상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등에 관한 법률	91
4. 내수면어업법상 관상어양식업	95
제 2 절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설명자료	98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

(1) 수산업의 가치창출 패러다임 전환

수산업의 가치창출 방식은 과거 1차 산업중심에서 향후 2·3차 산업의 융복합 형태로 진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수산업 가치창출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과거·현재	미 래	비 고
영역	1차 산업	1·2·3차 복합산업	생산·섭식에서 가공·유통을 거쳐 보고 즐기는 산업 으로 변화
생산 기술	포획·채취 기술	Bio Technology	종자 육종·생산, 형질 전환 등
조업 방식	어선업·나잠업 등	양식업	외해 가두리 양식 등 양식 어업의 범위 지속 확대
대 상	국 내	세 계	FTA 확대 등 시장 개방 가속화 DDA, FTA 확대로 식품 부문 경쟁 가속화

관상어는 식용어종에 비해 수십-수백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희소한 어종의 생산기술을 개발·보유할 경우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표> 식용해수어와 관상용 해수어의 가격 비교

생물 종류	크기와 중량	가격(kg 환산)	비 고
넙 치	45cm/1kg	9,000-13,000원/Kg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중
파랑돔류	5cm/2g	1,000,000원/Kg	독점 생산기술 확보

<표> 고급 관상어 어종의 가치

<p>비어류 관상어(크리스탈레드쉬림프)</p>  <p>원종은 2\$에 불과하지만 품종 개량을 통한 경우 3,500\$ 이상에 판매. 국내 가격(10만 ~ 200만원 대)</p>	<p>아로와나</p>  <p>CITES보호어종으로 극소수 양식어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여 고가로 유통 중(수십 ~ 수천만원)</p>
---	--

식용위주의 수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선점을 목표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약탈적 조업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업도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어장환경이 황폐화되고,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2) 저탄소 · 친환경 · 자원절약 · 지속가능성을 지닌 녹색생명산업

관상어산업은 연관 범위가 넓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표> 녹색성장전략과 관상어산업

녹색 성장 전략	관상어 산업의 특징
저 탄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에 비해 탄소 발생 요구 수준이 낮은 저탄소 산업 * 주요 탄소 발생 요소 : 열대어 양식에 필요한 난방
친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상어 수조(어항)는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수중 생태계를 재연하고 있어 자연 · 환경 · 생태계 친화적 속성을 지님
자원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투입보다는 신제품 개발 · 개량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지식 기반 산업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양식을 통해 생산 · 유통되어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

연관일자리로서 수족관운영, 관상어 양식, 용품 제조, 도매 유통, 수출 및 수입, 질병 관리, 조경, 수족관 전시, 연구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민 여가 활동 및 취미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친숙한 수산업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상어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연두업무보고 중 “수산물관상생물산업 육성 등으로 수산종묘 수출기반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육성방안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였고, 관련 연구용역 시행한 바 있다.

- * 관상생물 연구개발 T/F(수산과학원, '09.12 ~ '10.12)
- * 2010년 하반기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상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 발간(연구기간 : 2010.6.14.-2010.12.21)

정부는 2003년 섬진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 2008년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지원(해양수산부)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관상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 * 수출 지원 내역 : ('08) 충북 1억 원 / ('09) 충북 0.7, 제주 0.35 / ('10) 충북 0.65, 제주 0.35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장기적 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의 미약하였고, 목적과 수단의 종합성이 부족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추진체계 및 전략

-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 강화 및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 법제연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수산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전문가간의 학제간 연구 필요
 -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 도출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 학계, 전문가 중에서 동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정보 수집·활용을 통한 분석 실시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 관련기관 및 세미나자료, 외국 전문기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활용
-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
 -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하여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

제 2 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제 1 절 대내 및 대외 여건 분석

1. 관상어 산업의 공간적 범위 설정

최근 국내외적으로 식용 양식어종 사업이 아닌 관상어산업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재인식되고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식용 양식어종 사업이 1차 산업인 것과는 달리 관상어산업은 1·2·3차 산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확장이 가능한 복합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시 말해 관상어산업은 1차, 2차, 3차까지 연계되는 복합 산업으로서, 1차 산업으로는 종묘생산·양식, 2차 산업으로는 관련 용품들을 생산가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차 산업은 사육 및 관리, 전시 서비스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상어산업은 모든 산업 분류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되어 발전할 수 있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복합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식용 양식어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희귀한 관상어의 개발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육종·품종 개량, 유전자 조작, 어병관리 등 첨단 생명과학 기술이 요구되는 녹색생명산업이기도 하다.

관상어산업의 범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산업은 생물 산업으로 종묘생산·양식하는 것이다. 즉, 관상어의 분류에 따라 세분화된 해수어, 담수어(열대어, 토속어, 금붕어 및 비단잉어), 비어류(수초, 파충류, 갑각류 등)들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2차 산업으로는 용품산업으로 관상어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과제, 산소발생기, 수중 모터, 조명, 히터 및 냉각팬 등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3차 산업으로는 서비스 산업과 R&D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관상어를 소비자 또는 관람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유통·판매, 수출입 등이 있고, 수족관 관리, 코엑스와 63빌딩 등의 대형 수족관과 상설 전시장 등이 있다. 그리고 R&D 산업에는 관상어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신품종 및 사육 기술 개발, 질병관리, 용품 및 디자인 개발 등이 포함된다.

<표> 관상어산업의 범위

구 분	산업분류	내용적 범위
생물산업	1차산업	해수어(흰동가리돔, 해마, 나비고기 등), 담수어(열대어, 토속어), 비어류(수초, 산호, 파충류, 갑각류 등)
용품산업	2차산업	여과제, 산소발생기, 히터 및 냉각팬, 수중모터, 조명, 어항(수조), 사료(먹이),약품, 여과기 등
R&D 산업	3차산업	유통 및 판매, 사후관리(수족관 관리 등) 서비스, 수출업, 대형 수족관 및 상설전시장 등
서비스 산업		신품종 종묘생산, 사육 및 양식기술 개발, 질병관리, 용품 및 제품 개발, 조정 및 디자인 개발 등

2.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기술개발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관상어 관련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 미래양식연구센터)가 있으며,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립 내수면연구소, 제주대학교 및 부경대학교 등에서 관련 연구를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면 및 내수면의 식용 분야에서는 우수한 양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바다 및 민물의 관상어에 대한 R&D는 최근 들어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활용한 연구 등을 통한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바다 및 민물에 대한 관상어의 기술개발의 핵심은 육종기술에 의한 신품종 개발 및 품종 개량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나,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양식 기술을 접목하여 지속적 R&D를 통해 관상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축적 중에 있다.

비단잉어, 금붕어 등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및 시·도립 내수면연구소가 담당하며, 비단잉어 품종개량을 위한 육종 기초연구, 세포유전학적 연구, 종묘생산 및 기술전수, 우수품종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입 원종의 확보, 본격적인 고가 상품개발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관상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열대어는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양식되고 있는 열대어 일부에서는 근친교배로 열성화되고 있고, 향후 세계 관

상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선발 육종, 우량종 번식, 고급품종 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관상어 양식 기술 R&D 현황

구 분	연구 기관	연구내용
2009 이전	해수관상어센터	● 흰동가리돔류 7종 양식산업화 성공
	국립수산과학원 제주대학교	● 흰동가리돔류의 인공번식 및 대량생산 ● 해마류의 인공번식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 세계 최초로 저고리파랑돔의 인공번식 성공 ● 세계 10대 해수관상어류인 파랑돔류(노랑꼬리파랑돔, 파랑 점자돔) 인공번식 ● 희귀 고유 담수관상어인 묵납자루 등 12종에 대한 양식기 술 개발
2009	내수면양식 연구센터	● 묵납자루 붙임 개체군 생산을 위한 기초 연구 ● 비단잉어와 홍잉어 교배에 의한 후대생산
	경남 수산자원연구소	● 비단잉어 우량품종 양식기술 개발
	충북 수산자원연구소	● 비단잉어 우수품종 선발육종 연구
	충남 수산연구소	● 비단잉어 채색변화 시험
2010	국립수산과학원	● 소형 형광관상생물 개발 대상종 선정 및 유전자 도입 ● 수산관상생물 전략품종의 번식특성 조사(해마 1종 인공번식 성공) ● 수산관상생물 전략품종 사육기술 연구
	부경대	● 형광송사리 개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안) 수정보완.

한편, 고유종(토속어)과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가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등록(묵납자루, 잔가시고기, 꼬치동자개, 통사리 등 14개

지정)되어 종 보존 및 육종, 품종 개량, 양식기술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과 부경대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형광 관상생물의 개발을 시작하여 형광 송사리 개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

해수관상어와 관련한 R&D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제주대, 해수관상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몇몇 품종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흰동가리돔(7종)과 해마(2종)에 대해서는 인공 번식 및 대량 생산체제를 확립하였고, 파랑돔류(3종), 나비고기류(2종), 해마(2종) 등은 기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관상어의 R&D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시·도립연구소, 대학, 해수관상어센터 등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이들 연구기관은 주로 식용 양식어종에 대한 R&D가 집중되어 있어 실제 관상어 R&D는 지원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2010년 관상어 관련 R&D 예산은 해수관상어 양식개발 및 형질전환 관상생물 개발에 한정하여 5억 원에 불과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유종 민물고기의 R&D 역시 고유종의 기초 생태 및 사육조건, 해수관상어의 양식 기법에 관한 연구 등 기초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관상어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품종(구피 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관상어 R&D를 위한 인력과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립수산물과학원 내에 관상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민간 차원의 R&D 및 인력도 전무하다. 그리고 관상어와 관련된 R&D는 대부분 관상생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관상어산업에서 약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관련 용품에 대한 R&D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SWOT분석

우리나라 관상어산업의 SWOT분석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SWOT 분석은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론으로써, 하나의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입 전략을 도출하고자 진입에 따른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s(위협)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분석 기법은 경영학 측면의 적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 정책 도입 시 이에 따른 추진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적용하였다.

(1) 관상어산업의 강점

관상어 수족관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인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병원이나 관공서 등에 많이 비치하고 있다.

관상어는 애완동물의 털이나 분비물 때문에 유발되는 알레르거나 배설물 청소, 고가의 사료비에 대한 문제가 없고, 실내의 부족한 습기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줌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관상어가 살고 있는 수족관은 기르는 물고기나 수중생물 등의 산란과 번식과 같은 흔히 볼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가까이에서 보여 주므로 자라는 아동이나 교육중인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밖에 장점으로는 인테리어로서의 관상어산업이다. 집안이나 공공건물의 인공물에 의한 장식보다는 잘 가꾸어진 수족관 하나가 훨씬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2) 관상어산업의 약점

관상어는 사람과 직접적인 교감이 가능하지 않으며, 만지거나 같이 산책하면서 사람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관상어산업을 통해 유전자 변형 및 생태보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상어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양식업체에서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경쟁력이 있는 관상어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하기보다 대부분 수입산 관상어를 들여와 양식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3) 관상어산업의 기회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이 다양해지면서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상어 동호회가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에 관상어가 입점하면서 관상어 구매가 용이해졌고, 온라인 관상어 판매가 생기면서 더 쉽게 관상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웰빙 라이프 중시, 친환경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실내공간에서 쉽게 자연생태계의 대리만족을 위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관상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상승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관상어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관상어 생산에서 품종이 다양해지고 열대어의 수입 증가에 따라 관상어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체계적인 관상어 양식기술이 개발 및 보급되면서 장기간 관상어 사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관상어산업의 위협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생활공간이 고층 건물 및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일반 주택에서 가지고 있던 대형 어항, 연못 등의 관상어 사육공간이 감소하였다. 이로써 전통적 관상어인 금붕어 및 비단잉어의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정 내에 사육되고 있는 관상어에 대한 사육기술이 제때 개발·보급되지 않아 관상어의 폐사율이 높아졌다. 특히 비단잉어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외국에서 수입한 이식 중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KHV)가 발병하여 폐사가 만연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IMF로 인한 경기불황, 관상어 용품의 수입 확대 등으로 국내 관상어 산업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 밖에도 관상어산업의 축소에는 관상어와 경합관계에 있는 애견 시장이 급속히 성장된 점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관상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품종은 대부분 수입산인 열대어가 중심이며, 관상어 용품 역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향후 관상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표> 관상어산업의 SWOT Matrix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생태계 관찰을 통한 정서적 안정 (병원, 관공서 설치) • 실내 수분 조절의 기능을 통한 건강에 도움 • 자연 생태계 구현을 통한 수족관 인테리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견 대비 관상어는 직접적 교감의 어려움 • 유전자 변형 및 생태보전 문제 • 국내 영세한 소규모 관상어양식 현황
Opportunity(기회)	Threats(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근무, 취미생활로 인한 관상어 관심 증가 • 대형마트 관상어 판매 • 관상어 온라인 판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로 인한 경기 불황 • 애견시장 성장으로 인한 관상어 산업축소 •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폐사 • 해외 관상어 용품 수입확대

제 2 절 관상어 산업 문제점 분석

1. 현행 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1) 관상어산업의 생산기반 취약

국내 관상어 생산이 대부분 영세한 시설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온 등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관상어 생산시설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에 분산되어 있어 규모를 크게 하거나 자동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응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상어를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여 양성하거나 근친교배 등을 통한 생산을 하다보니 품종의 열성화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관상어 생산 품종은 구피 등 양식이 쉬운 어종만을 생산하고 있어 고가의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관상어 생산자는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시설로 양식기술이 낮아 질병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전염병이 발생하면 집단 폐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관상어 R&D의 미흡

지금까지 국내 수산분야의 R&D는 식용 양식어종에 대한 R&D에 집중되어 있었다. 관상어에 대한 R&D는 대부분 토속어종 기초생태 및 사육조건, 해수관상어 양식기술 개발 등 기초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열대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종자산업 경쟁, 생물 종 다양성에 대응하여 특이성과 희소성이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유종의 상품개발(품종개량)의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상어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관상어 양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절감형 사육기술, 사료 및 어병, 관련 제품개발 등의 R&D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상어 관련 R&D 인력 규모와 수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관상어 관련 기술 보급, 교육·컨설팅 등의 기능도 결여되어 생산자의 품종개량 미흡, 생산기술 낙후 및 전문성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3) 국내외 관상어산업 정보 미흡

국내 관상어산업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련된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상어산업 분야별

로 기초자료와 정보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상어 수요 특성, 소비 동향 등의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조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내 관상어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관상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동향, 소비트렌드, 품종별 교역 패턴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다.

<표> 관상어산업 현행 기술 개발사업의 문제점

구 분	주요 내용
관상어산업의 생산기반 취약	- 영세한 소규모의 관상어 생산시설 - 수입산에 의존한 관상어 생산
관상어 R&D의 미흡	- 열대어 연구, 종자산업, 고유종의 상품개발 연구 - 관상어 양식의 비용절감형 사육기술, 사료 및 어병, 관련 제품 개발 - R&D 인력 규모 및 수준 - 관상어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컨설팅
국내외 관상어산업 정보 미흡	- 국내 관상어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련된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 - 세계 관상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동향, 소비트렌드, 품종별 교역 패턴 등의 기초조사

2. 국내 시장 및 수출 관련 현황 파악

관상어 용품 산업에서 소수 용품은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용품들은 독일, 중국, 일본 등이 생산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관상어 수출은 1997년 4만 달러에서 2000년 16만 달러, 2002년 39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0년 4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비단잉어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특히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비단잉어가 KHV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품으로 국산 비단잉어가 수출되었으나, 그 이후 국내에도 비단잉어 KHV가 전염되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다. 2009년도부터 다시 수출이 재개 되어 2010년에는 3만 달러 수출을 하였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등장으로 수출이 정체하고 있다.

<표> 우리나라 관상어 수출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구 분		1997	1998	2000	2002	2003	2004
수출	금잉어	20					
	열대어	1	5			11	
	기 타	21	83	155	394	257	214
	해수어		34			27	8
	산 호						
	계	42	122	155	394	295	222
수입	금잉어	9	1	8		1	10
	열대어	1,803	856	1,951	2,110	2,367	2,641
	기 타	17	77	550	173	190	316
	해수어	28	2		3	5	1
	산 호	154	38	65	130	143	153
	계	2,011	974	2,574	2,416	2,706	3,121
무역수지		-1,969	-852	-2,419	-2,022	-2,411	-2,899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금잉어					3	29
	열대어		9		1		
	기 타	308	207	404	385	371	407
	해수어						
	산 호				5	2	
	계	308	216	404	391	376	436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	금잉어	38	241	267	177	107	76
	열대어	2,820	3,418	3,948	4,174	3,666	4,107
	기 타	305	555	534	279	247	263
	해수어	25	11	34	12	55	77
	산 호	58	69	118	134	103	201
	계	3,246	4,294	4,901	4,776	4,178	4,724
무역수지		-2,938	-4,078	-4,497	-4,385	-3,802	-4,288

자료 :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출입통계

국내 관상어산업에서 해외 관상어 수입은 1997년 201만 달러에서 2000년 257만 달러, 2004년 312만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478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수입금액은 199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2009년에는 418만 달러로 수입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회복과 함께 472만 달러로 관상어 수입이 회복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내 관상어 수요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주요 관상어 수입은 대부분 열대어(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해수어, 산호 등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관상어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담수관상어와 해수관상어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담수관상어는 약 1000여종, 해수관상어는 약 500여종이 수입되고 있다. 이 중에서 담수관상어는 중국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수관상어는 산호 등 고급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관상어 현황

구 분	담수(민물)	해수(바다)
수입국	약 30개국	약 10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위주(수입량 80%)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수입량 95%)

구 분	담수(민물)	해수(바다)
수입품종	약 1,000여종(주수입품종 300여종)	약 500여종*주수입품종 200여종)
	제브라피쉬, 테트라, 시클리드 등	담셀, 아네모네피쉬, Anthias 등
수입시 폐사율	동남아시아 국가 : 5%미만 남미, 유럽 등 : 10%미만	20~30%
생산	대부분 양식산	자연산
	공급량 안정적	현지 수급 사정에 따라 반입량 차이 많음
기타	이동시간이 짧은 중국에서의 반입량이 크게 증가 중	산호 등 고급 관상어 수입 증가

자료 : KMI,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2010, p.24.

(3) 법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 분석

관상어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없으며 대부분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대부분 식용 양식어종, 천연기념물 또는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관상어산업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측면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관상어산업의 육성·발전, 수출지원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 현장과 괴리가 있는 제도로 작용하였다.

한편, 관상어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식용분야의 양식에 집중되었으며 관상어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거의 수립되지 않았다. 최근 관상어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관상어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상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에서야 다행스럽게도 관상어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정해졌고,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한 관상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상생물 연구개발 T/F도 운영 중이다.

<표> 법제도 미비로 인한 관상어산업 문제점

구분	문제점	비고
관상어산업 법제도	-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도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내수면어업법, 수산업	- 관련부처가 일부 있어 법제도 제정시 해당되는 법

구분	문제점	비고
	법), 환경부(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보호법) 등 3개 부처의 관련법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제도 검토 필요
관상어산업 정책	- 식용분야의 양식업 발전에 치중하고 있어 관상어산업을 위한 정책수립 미비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에서 정책수립 중

제 3 절 세계 주요 국가의 관상어 산업 현황

1. 호 주

(1) 국가 관상어 관리 시행 그룹(The National Ornamental Fish Management Implementation Group)

호주의 관상어 산업은 교역업, 양식업자, 소매업자, 취미를 돕기위한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연간 3억 5천만 달러(2011.7.25일 기준 원화대비 1142원, 총 4000억원)로 추정된다. 수족관 물고기는 훌륭한 애완동물이지만 그대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호주 수생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관상어와 수초는 수장되거나 우연히 방류될 수 있고, 이것은 종종 수로로 흘러들어 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호주에는 수많은 이종의 어종들이 존재하고 있고, 민물 생태계의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검역 규제, 국가 어업 규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독성 있는 또는 잠재적으로 독성 있는 수생유해생물의 문제를 다루는 규제 기관들간에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2006년에 자연자원관리 장관 회의(Natural Resource Management Ministerial Council)은 호주에서 관상어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A Strategic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Ornamental Fish in Australia)라는 국가전략을 승인했다. 동 전략은 관상어정책워킹 그룹이 기업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개발한 것이다. 그것은 수족관 물고기가 유해 생물(pest)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며, 그 교역을 관리, 규제함에 있어서 7가지 주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한 권고사항으로는 국가적으로 독성 있는 종의 목록의 작성의 필요성, 관상어 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 정립, 이해관계인과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물고기가 수로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류의 위험에 대한 대중 홍보 캠페인, 그리고 물고기의 수요가 다했을 때 그 물고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관상어 관리 시행 그룹(OFMIG)은 이러한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동 그룹은 기업, 취미, 호주 정부 대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주 및 지역 관할권으로부터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호주의 관상어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A Strategic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Ornamental Fish in Australia)¹⁾

1)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호주에서 관상어의 교역은 연간 대략 3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에는 상업적인 양식 시설, 도매 교역업, 소매업 및 취미를 돕기 위한 산업까지 포함된다.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종이 교역되고 있는지 또는 양식이나 교역에 있어서 금지되거나 독성이 있는 어종의 수를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서 수많은 어종들은 현재 「1999년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A부에 따라 확립되었거나 검역 규제에 포함된 국가적으로 허용된 어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종들은 이전의 법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규제 기관마다 독성을 가진 수상 생물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체계나 규제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 관상어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주로 규제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접근방식과 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이 부족하고 참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호주 애완동물산업연합(Pet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PIAA)은 관상어 교역의 이러한 심사를 지원해왔다. PIAA는 주 및 지방정부와 연합하여 산업이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 호주 농림수산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006. 11.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관상어 교역의 장래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7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관상어정책실행 그룹은 산업을 연구하고 권고사항을 발전시켰는데, 산업의 규제 및 관리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임시방편적인 접근법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호주 수산업 및 해양산업에 외래종의 습격 및 질병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동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은 국가적으로 인정한 독성이 있는 종의 목록 및 관상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포괄적인 교류 계획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인들과 전체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06년 11월 제11차 회의에서 국가자원관리부 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승인했고 주요한 권고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결의했다.

2) 현존하는 규제(Existing controls)

현재, 관상어 또는 수족관 교역의 관리 및 규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호주의 어류수입은 호주 검역검사본부(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이하 “AQIS”라 한다)를 통하여 환경수자원부(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DEW)와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규제된다.

둘째, 상업적인 규모의 국내 양식업, 보관 및 운송업은 주 및 지방 입법에 의해서 규제된다.

① 수 입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이하 “EPBC 법”이라 한다)과 1908년 검역법(Quarantine Act 1908)이 호주의 동식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각각 DEW와 AQIS에 의해 집행된다. 생물의 수입에 있어서는 두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이 요구된다.

EPBC 법 제303조는 수입이 승인된 종들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목록에 없는 어종은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 승인된 어종의 목록은 DEW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수입규제와 수입비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Part 1은 EPBC 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생물 종의 목록이다. 그것은 CITES(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포함된 종의 목록을 포함할 수 없다.

Part 2는 EPBC 법에 따라 DEW로부터 수입 허가를 요구하는 종들의 목록이다. 그 목록에 규정된 종들의 수입은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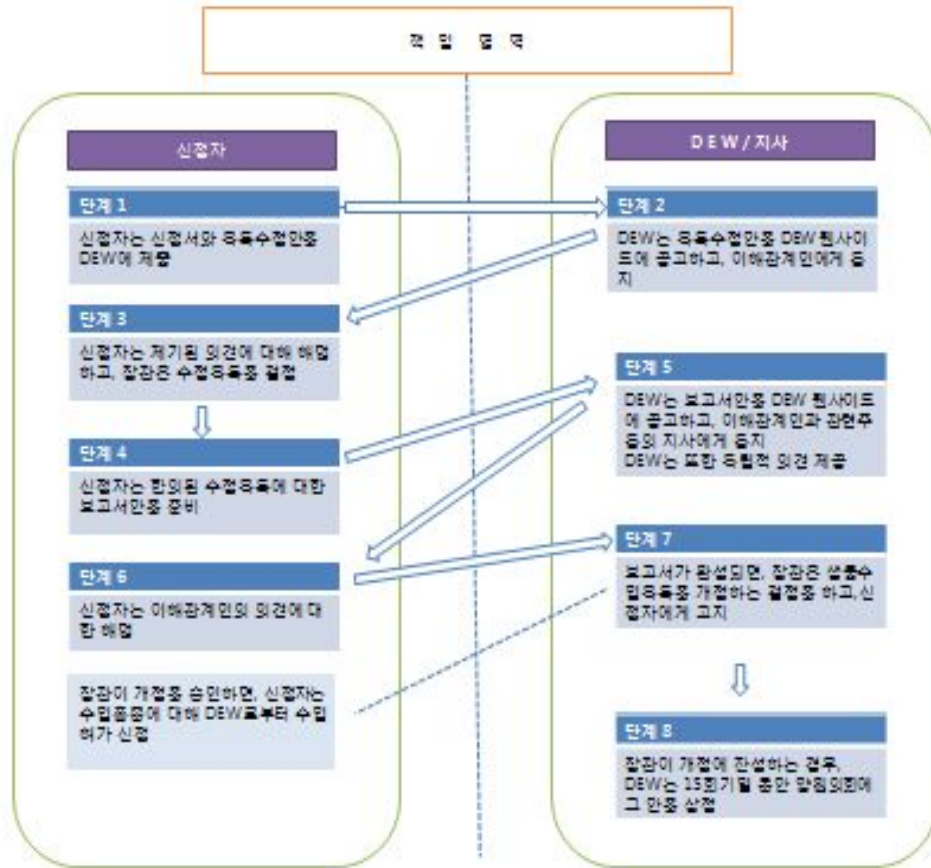
② 수입이 허용되는 목록의 개정 신청

생물의 수입을 위한 종이 현재 수입이 승인된 종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든지 목록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수자원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 어종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조사된 후에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목록의 개정은 사례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6-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그림 1에 있는 흐름도는 개정서 제출에 관한 단계를 단순화한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나 그 절차는 현재 심사중에 있으므로 DEW 웹사이트는 가장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1 DEW의 생물수입절차의 흐름도>



③ AQIS와 호주 생물안전성위원회(Biosecurity Australia)의 역할과 책임

모든 어류 수입 허가는 캔버라에 있는 AQIS의 동물수입국에 의해서 발급된다. 동 국은 모든 관상어 허가를 평가하고 발급할 책임을 지고, 각 지역 공무원이나 수입업 자에게 수입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국가적 문서 정보가 지속적으로 갱신되 었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역의 AQIS 검역 공무원들은 운영적 측면을 시행한다. 그들의 임무는 검역 승 인 문서(quarantine approved premises)의 승인과 등록, 국내 진입시 문서 및 어류의 검 사, 검역 승인 문서의 기록 및 어류의 최종 검사, 검역 후 어류의 방출을 담당한다.

AQIS는 안전성 인증서가 수입 허가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어류는 EPBC 법과 검역 규정하에서 수입이 허용된 목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육안으로 검사한다.

어류는 증별로 포장되어야 하고, 검역관에게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한 다. 안전하다고(살아 움직이고 질병이 걸렸다는 징후가 안보이는) 보이는 어류는 도착

후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QAP로 보내진다. 분명히 질병에 걸렸다고 판단된 선적이나 운송은 수입이 거부되고,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재수출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 특정 종에 대한 검역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AQIS의 수입 조건 데이터베이스인 ICON에서 확인 가능하다.

호주 생물안전성위원회(BA)는 생물 안전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심사할 책임이 있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그러한 정책의 해석에 대하여 AQIS에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BA는 또한 해외 기관의 권한을 심사하고 그러한 기관 승인에 관해 AQIS에 권고를 한다.

유전자변형어종의 수입 신청은 유전자기술규제국(Office of the Gene Technology Regulator: OGTR)으로 이관된다. OGTR은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며, 위험이 경미한 경우에 면허를 발급한다. 수입 운송에는 여전히 AQIS의 수입 허가가 요구된다. OGTR이 GMO의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에, DEW와 AQIS는 그 결정을 유보할 것이다. GMO의 수입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전 또는 수입 허용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AQIS 및 DEW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주 또는 지역의 규제

모든 주 및 지역에는 관상어 교역에 있어서 외래 어종을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포괄적이지 않고 그 부문의 필요성 및 관련성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리적 양식업자들은 수상 면허에 대한 조건에 따라 영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매업자들은 그들이 PIAA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산업 행동강력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PIAA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다.

주 및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관상어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두가지 메커니즘-금지어종 목록과 허용어종 목록- 중 하나 또는 양자에 의존을 하는 편이다. 금지어종 목록을 따르는 경우에, 기관들은 광의의 페스트로 인정된 어종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금지된 또는 독성을 가진 어종 목록에 포함시킨다. 보통 그러한 어류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금지 어종 목록은 일반적으로 적고 집행하기도 용이하지만, 유해동식물로서의 위험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종의 교역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EPBC법의 수입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주나 지역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어류는 일단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 소유가 가능하고 교역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법적 지위가 어느 법령에도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에 밀수된 대부분의 어종들은 현행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 국내에 수입된 어종들과 함께 여기에 속한다.

지역간의 차이는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종들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 지역의 개별적인 노력을 야기한다. 많은 경우에, 한 지역에서 금지된 어류는 이웃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경간 이송될 수 있다. 또다른 어려움은 유해어종 규제 입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불일치성이다. 유해어종에 *Cyprinus carpio*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Koi'란 carp의 교역을 일부 주가 허용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밀수입을 통제하고 현행 금지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세계 민물 어종간에 수입을 허용해야 할 종을 확인하는 어려움이다. 외래 관상어종의 확인은 규제기관에서 항상 이용가능하지는 않은 상대적으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 허가 제도는 수입량을 제공하는 정확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를 우회하려는 개인들은 정당한 어종과 함께 숨겨진 금지어종 유형을 혼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1은 유해 어종을 공표하고 어종을 리콜 또는 포획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주, 지방정부 및 호주 연방정부의 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외래어종의 규제 및 통제에 관한 지역별 현재 법률 요약>

주	법률	주관 행정기관	유해어종 공표 권한	동물의 통제 및 포획
퀸즐랜드 주 (QLD)	1980 자연보호법 2000 어업법 2005 유해종식물법	Environment ACT	V V V	V V
뉴사우스웨일스주 (NSW)	1923 어류법 1994 어업관리법	Dept. of Primary Industries	V	V V
북 Territory (NT)	1988 어업법 및 어업규칙	Industry and Fisheries	V	V
퀸스랜드주 (QLD)	1994 어업법 1995 어업규칙	QDPI	V V	V
남호주주 (SA)	1997 어업법 1982 어업법(declared under regulation)	PIRSA	V 외래어류	V V
타스마니아주 (Tas)	1995 수생자원법 1995 내수면어업법	DPWTE IPC	V V 중재어종	V V
빅토리아주 (Vic)	1994 가꾸어업관리법 1995 어업법	VDPI	V	V V
서부호주주 (WA)	1993 외래종통제법 1994 수생자원관리법	Dept. of Agriculture Dept. of Fisheries	V	V V
Cwth	1991 어업관리법 1908 검역법 1999 환경보건 및 생물다양성보전법	ARMA AQIS DEW s	V § 301A는 생물다양성 성종 위협하는 종의 리스트 작성에 관한 규정용 두드림종	V V V

⑤ 위험평가 체계(Risk assessment framework)

지적인 바와 같이 페스트나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호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어종들이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AQIS(현재 호주 생물안전청)의 정책부서는 관상어에 대해 수입 위험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1999년).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허용된 수입 목록에 포함된 종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종들은 고려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DEW가 호주 내로 수입될 예정인 생물종에 관한 환경 위험 평가를 하는 법률상 절차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평가를 받지 않은 종들의 다수가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종을 수입할 필요가 거의 없다.

특정한 종들의 환경에의 정착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공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의 확인이다. Bomford²⁾는 호주에서 외래 육상 척추동물의 수입과 보관에 있어서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동 모델은 야생에서 종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에 도입된 조치들의 심사를 거친 후에 개발되었다. 불행하게도 동 보고서는 심사의 대상인 척추동물 페스트 가운데 어류를 고려하지 못했다.

DEW는 최근에 민물 및 연안의 어류의 정착을 위한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동 모델의 개발자와 자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육상 척추동물의 위험평가모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확립된 평가 체계는 정착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외래 어종의 정착상 위험을 결정하는데 확인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방류 건수
- 기후 적합성
- 다른 곳에 야생 어종이 정착한 역사
- 해외 지리적 범위의 규모
- 분류학상 그룹

정착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요소가 많이 있지만, 위에 열거된 요소를 사용하는 이점은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FishBase³⁾). 이는 많은 수의 종을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한다. 관상어정책그룹의 DEW대표자는 그들이 이 위험평가 모델을 외래민물어종의 수

2) Bomford M (2003). Risk Assessment for the Import and Keeping of Exotic Vertebrates in Australia. Bureau of Rural Sciences, Canberra.

3) <http://www.fishbase.org/>

입에 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관상어정책그룹 또한 관찰대상 종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과학적이고 기술적 심사 그룹이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을 권고했다.

3) 규제체계안(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관상어의 사육 및 판매는 국내 정책상 조치로부터 입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 및 규제되고 있다. 현재 호주 전역에 접근법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해 주와 지방정부간 어류 이동 및 판매에 대해 기업과 일반 국민들 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지역별로 관상어 산업에 특유한 현존하는 규제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호주의 관상어 관련 현행 규제 >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빅토리아	이론상, 1995년 어업법에 따르면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규모 양식업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제도는 사람들의 소비를 위하여 물고기를 생산하는 대규모의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와 43조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당신이 판매 또는 다른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물고기를 부화, 양식, 전시 또는 기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서식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인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적정한 면허 제도가 관상어 부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있음
남호주	남호주는 2001년 양식업법에 의해서 영업 또는 교역의 목적으로 유지되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현재의 면허 제도는 다양한	현재 남호주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당신이 면허를 받을 필	모든 관리 및 면허 제도가 심사 중에 있다. 남호주는 면허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p>있는 수상 조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수족관 어종의 일부 생산업자들은 양식업법에 의하여 이미 면허를 받았고, 동법하에서 관상어 양식업자의 면허를 확대하기 위한 권한도 동법에 존재한다. 적용이 되자마자, 1982년 어업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록상의 ‘허가’ 관상어종의 양식을 위해서 허가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다양한 결함 및 어려움으로 인해 허가제도를 시행할만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p>	<p>규모의 해상 및 육상 양식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어업법상 허가제도가 제안된 바 있다.</p>	<p>요가 있는 물고기를 양식하고, 허가 목록에 있는 물고기를 키우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당신이 관상어를 양식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는 PIRSA 양식에 의해서 면허제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을 것이고, 대부분이 면허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주나 지방과의 보완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일단 관상어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p>	<p>제도를 철저히 심사하기 전에 관상어정책 그룹의 권고사항을 기다릴 것이다.</p>
<p>퀸즈랜드</p>	<p>이론상,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1995년 어업법 하에서 면허나 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규모의 양식업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한다.</p>	<p>면허제도는 사람의 소비를 위해 물고기를 생산하는 대규모의 양식업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p>	<p>법률은 모든 형태의 양식업에 적용된다.</p>	<p>예. 양식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요구된 개발 권한. 규모가 더 적고 위험부담이 적은 개발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규정이 입안되어 심사중임</p>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 L 이상 인 개발에는 어떠한 등록도 요구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요건의 개발에만 등록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는 연못 - 5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연면적 ● 주의 : 위의 사항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 <p>대규모의 개발과 위험부담이 낮지 않다고 여겨지는 개발은 승인 및 허가를 요한다.</p>
서호주	소매업자에게는 면허가 부여되지 않음. 유해 어종의 수입 금지. 어류 양식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운영자는 승인 신청할 것.	N/A	N/A	아니오. 환경과 어업의 가치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면허제로부터 가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부처는 변화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정책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더욱 낮은 비용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다는 분명한 비용/편익 분석이 없다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북부지역	활어는 허가제도를 통해 수입. 모든 수족관의 판매는 면허를 통해 보고. 양식업 허가 하에서 관상어종의 생산 면허제	수입 및 교역의 당사자 인식. 수입 및 교역의 대상 인식. '어류'의 종의 기원 인식. EPBC 법 및 유해어종 목록을 고려하여 수입 품종 통제. 질병 문제와 관련하여 장소 이전의 통제	관상어를 거래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북부지역 어업법 및 규칙 182와 199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아니오.
호주 수도	어류 판매에는 면허 불요. 활어에는 수입 면허가 요구됨. Pet 교역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적절한 활어는 면허를 받고 보유하고 및 수출입 수량을 보고해야 한다.	ACT로부터 수출입되는 활어는 면허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후 추적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2000년 어업법 제22조. ACT로부터/로의 활어의 수출입. 제28조는 “관련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니오.
뉴사우스 웨일즈	애완용 물고기 판매상점은 NSW의 주요산업부의 규제	소매업자보다는 양식업자를 주 적용대상으로 함	허가를 보유한 자들은 다른 양식업자와 동일한	아니오.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p>를 받지 않는다. 이론상, 수족관 거래를 위해 물고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NSW의 1994년 어업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관상어를 생산하는 양식허가 보유자는 7명이다.</p>		<p>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p>	
<p>타즈매니아</p>	<p>민물고기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적 민물낚시 면허 ● 어장 면허 ● 어류 판매업자 등록 ● 면제 허가 <p>‘어장 면허’와 ‘어류 판매업자 등록’은 모두 민물 관상어 교역에 관련된 것이다. 어류는 면허나 등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수입, 양식, 판매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는 허가받은 활동과 허용된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자들은 인적사항,</p>	<p>신청이 있으면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영업 장소 및 시스템이 적절하고 적합한지, 운영은 양식어류와 토종어류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페스트와 관련하여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면허/등록은 조건부로 주어진다. 절차 자체는 신청자에게 그들의 사업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재고하고 인식할 것을 요구</p>	<p>민물고기를 수입, 양식, 판매하려는 사람은 전부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아니오.</p>

관 할	현행 면허 제도	면허제도의 기초	면허제도의 기준	현재 기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가?
	<p>영업장소, 시스템 디자인, 종, 양식 기술 및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에 관하여 종합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p>	<p>하는 교육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면허/등록 제도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면허/등록 제도는 우리에게 전후 상황을 추적할 수 더 큰 능력을 부여하고, 신속, 효율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면허/등록에는 비용이 부과되지만, 이것은 수익으로서가 아니라 비용을 상쇄하는 것이다.</p>		

한가지 주요한 쟁점은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취미로 관상어를 기르는 사람 또는 관상어 매니아층이라는 점이다. 취미와 상업적 활동의 규제 등에 관한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지역간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자신의 집에 작은 수조에서 몇 마리의 물고기를 기르는 지역의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닌 대량으로 물고기를 양식하는 대규모 운영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를 받은 상업적 양식업자와 집에서 취미로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들간에 마찰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그들은 지방정부로부터 개발의 동의를 얻거나, 주의 규제기관에 면허 또는 허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거

나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NSW에서 비단잉어 경매는 정기적인 이벤트이다. 이것은 관상어 시장에 상당한 경쟁을 야기하며, 검사의 기회를 갖지 않고도 “유해한” 어종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분명한 폐스트와 질병의 위험을 가져온다.

※ 언제 취미가 사업이 되는가?

법원은 일정한 행위가 사업인지 취미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엄격한 기준은 없다. 호주 국세청은 사업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사례의 전체적 배경을 고려한다. 법원이 채택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행위가 중대한 상업적 목적 또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 행위자가 상업에 관련되고자 하는 관심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
- 행위자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전망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행위에 반복성과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 수행되는 동종의 행위가 그 산업에서 수행되는 행위와 유사한 방식인가?
- 행위의 규모, 범위와 지속성은 무엇인가?
- 행위가 취미, 레크리에이션 또는 스포츠와 같은 행위로서 보다 잘 설명되는가?

호주에서 관상어 교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산업적 양식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리 문제에 관해 최신 정보와 교육 자료를 위한 의사소통 가능성 제공
- 질병을 감독,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예컨대, 가능한 경향을 결정하거나, 연안의 공급자에게 잠재적 질병 문제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지점을 기록하는 것)
- 모든 관련 주정부 등의 규제 요건들이 충족될 것을 보장하는 것(면허업자가 규제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표하면 이는 다른 면허업자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거래되는 종의 상황을 확인
- 소수의 불법 양식업자의 처리
- 유해 어종 또는 멸종 위기의 어종에 대해 밀수 배포 지점을 경감 또는 제거

대부분의 지역에서 애완용으로 물고기를 키우거나 판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 도시 지역에서 개인이 키울 수 있는 물고기의 수 제한과 허용된 수보다 더 많이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면허 조치
- 토종의 동물을 키우기 위한 면허 조치
- 외래 동물을 키우기 위한 면허 조치
- 유해 또는 페스트 종을 키우기 위한 면허 조치

따라서,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을 규제한 전례는 이미 비수상동물에서도 있었고, 관상어 거래의 규제는 다른 애완동물산업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수준에 적용되는 규제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1회 또는 연간 허가,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등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형태의 전국적 라벨링 체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등록은 준수, 질병 통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규제의 목적은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 또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장기간의 관리를 위해 정보를 수집, 배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의 규제 하에서 취미로 하는 대규모의 사육활동을 양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비영리적인 운영에 대해 면허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미래의 관리 목적을 위해 모든 대규모의 생산업자들간 제품의 설명책임과 추적가능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것은 면허/과세 목적상 다른 부류의 양식업자들을 인정하기 위한 소수의 규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관상어정책그룹(OFPWG)은 적절한 의사소통과 교육을 고려할 때 자기 규제가 취미 부문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① 애완동물 판매숍의 규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애완동물 판매숍은 어업 담당 행정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을 필요도 없고 등록을 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이 하수도 또는 환경에 오수를 배출한다면 지방정부나 그 지역 관할의 환경보호기관에 면허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호주 애완동물산업연합(Pet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PIAA)는 회원들을 위해 자율적인 행동강령을 개발해왔다. 협회는 회원들이 인가를 받은 영업 기준을 달성하

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기준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회원들에게 적용될 뿐이지만, 인가 프로그램이 운영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성공적인 것이라면 영리적 압박은 인가가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를 바란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5에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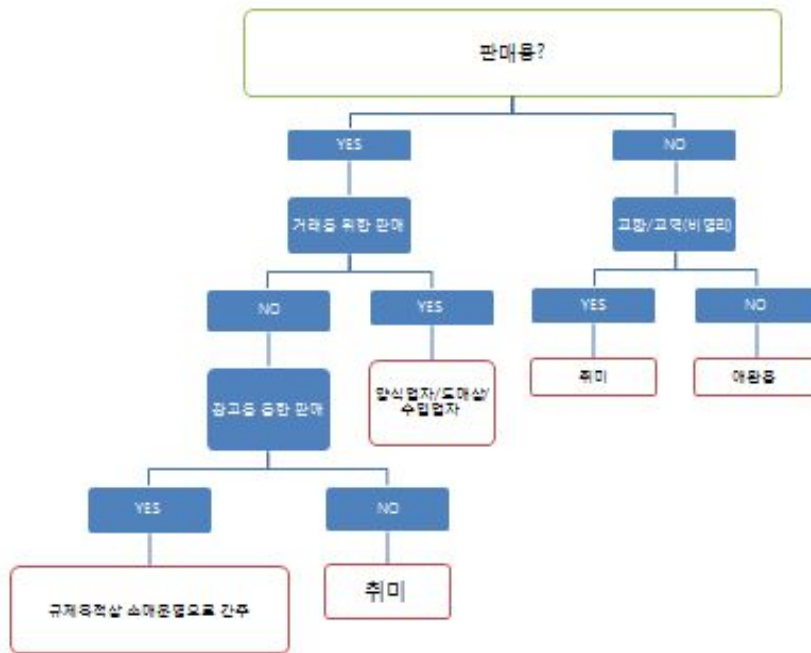
② 관상어 교역과 취미 부문의 규제를 위한 결정 지원 트리

표 2와 3에 있는 결정 트리는 각 지역이 여러 가지 운영형태들을 관상어산업의 특정 부문으로 일관성 있게 분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통제가 형식적인 규제 체계 밖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규제의 틀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개별 지역에 현존하는 규제 체계를 심사하고, 호주 전역에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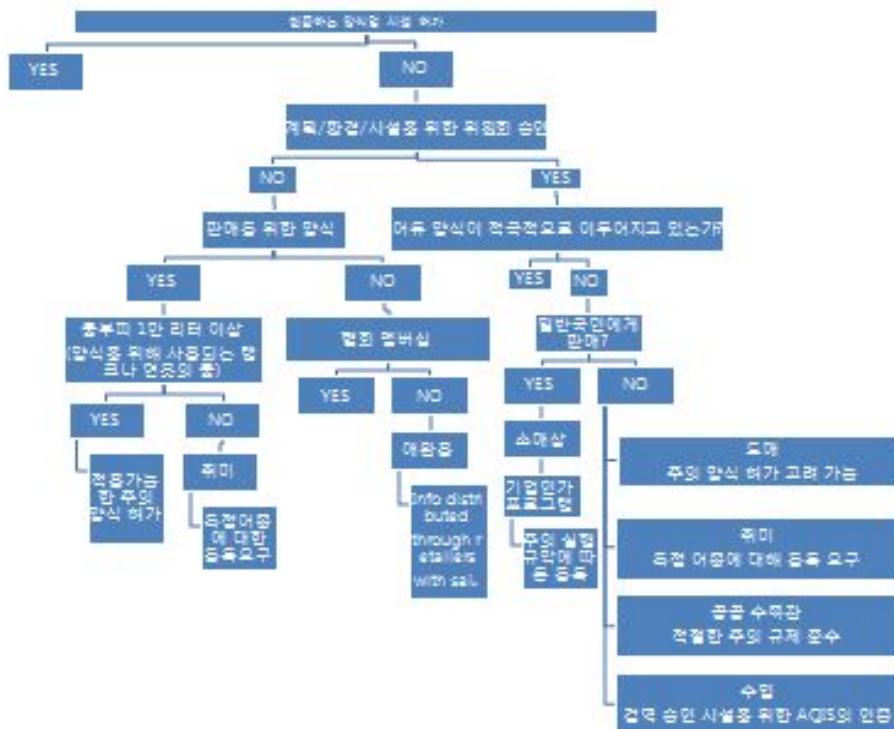
결정 트리는 규제자들, 관상어산업에 있어서 규제자들, 취미 부문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특정한 활동이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단순한 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트리를 적용하는 경우 친구인 취미가와 특이 어종을 거래하거나 동네 행사에서 물고기를 거래한 사람은 관상어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트리를 따라가 보면, 규제 기관은 그들이 유해하거나 평가절차 이후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결정된 것과 같은 특정 어종을 키우거나 양식하는 경우에만 그 활동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는 그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정보(새롭게 허용이 되었거나, 질병 또는 페스트 등의 이유로 금지된 어종)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활동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두 번째 트리 아래에 있는 노트가 중요하다. 이러한 결정 체계하에서 거대 규모의 물고기를 키우는 것은 주 또는 지방의 양식 허가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물의 부피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대부분이 관심은 일부 지역에서 허가제도에 관한 비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 양식 규제자들과의 토론 중에, 그러한 제도가 없는 지역들에서는 몇단계의 허가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분명해질 수 있는 작은 문제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단계적 허가제도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것’과 같은 추가적 기준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등록 허가를 창출할 것이다.

<그림 2> 어류의 판매/교역에 근거한 활동의 분류



<그림 3> 관상어 규제 결정 트리



4) 권고사항 및 다음 단계

① 권고사항

전략 계획은 호주에서 관상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권고한다.

1. 모든 지역에 걸쳐 전국적인 유해 종의 목록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채택할 것. 채택하는 경우에는 기존목록과 해양 페스트 종에 대한 작성중인 목록이 연관되어 있어야 함
2. ‘회색 목록(의심 목록)’에 포함된 어류의 현상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는데 합의할 것
3. 앞으로 2-3년간 의심 목록에 포함된 어류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워킹 그룹으로 하여금 국가자원관리상임위원회(National Resource Management Standing Committee)에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
4. 각 주 및 지역의 대규모 어류양식업자 및 관상어 수입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체계 및 면허제도를 도입할 것.
5. 호주내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유해 어류와 희귀어종의 규제 및 관리를 위한 통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이 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페스트를 위한 통제 계획과 연관되어 있어야 함
6. 수상 페스트 종으로 인정된 어종을 통제 및 규제하기 위해, 관상어 교역에 사용된 수상 식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개시할 것
7. 관상어 및 무척추동물의 관리, 통제, 규제에 관해 공동체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할 것

② 다음 단계들

이러한 국가 전략의 시행에 협력하고 실행하기 위해 관상어관리 실행위원회(An Ornamental Fish Management Implementation Committee)가 설립될 것이다. 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를 다루어야 한다.

- 새로운 유해종의 목록 및 새로운 규제 및 관리 장치들에 관한 전국적 교육
- 각 지역별 새로운 규제 장치들의 시행
- 유해어종이 교역되고 공동체에 보유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재정지원 메커니즘 합의

국가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이러한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해양수산위원회(The Marine and Coastal Committee)는 또한 수생동물보건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상어에 관련된 질병 위험에 대한 심사 결과 및 그 심사가 장래 관상어 부문의 관리 행위를 위해 가지는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싱가포르

(1) 개요

-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금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관상어 수출국(수출액 2004년 기준 4950만 달러)
- 수출 관상어 중 단일어종인 구피가 8% 규모
- 농업식품수의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AVA) 주축으로 관상어 전문단지(Agrotechnology Park) 조성하여 64개 관상어 기업 입주-> 싱가포르 전체 수출액의 약 절반 기여

(2) 「동물 및 조류법」(Animals and Birds Act) 제7장에 따른 「2011년 동물 및 조류(활어) 규칙」(Animals and Birds(Live Fish) Rules 2011)

1) 활어(live fish)

다양한 해양, 해수, 담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거북이, 수초, 해삼 및 기타 해양 생물들을 통칭한다. 여기에는 치어 및 알도 포함되고, 산 채로 수입 또는 수출되고,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활어의 수출입을 위한 면허

활어를 수출입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전자 신청 서비스(<http://www.ava.gov.sg>)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신청서비스가 오작동 또는 실패하는 경우에 신청은 장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관은 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조건을 부쳐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장관이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면허기간은 장관이 정하고, 수수료는 면허 발급 이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3) 허가 없는 활어의 수출입 금지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어의 판매, 공급, 분배를 위한 수입을 할 수 있다.

- (a) 면허를 받은 자가 활어를 수입하기 위해서 각 운송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각 운송의 수입은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b) 전체적 운송이 허가에 포함된 설명에 따르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로부터 어느 국가, 지역, 장소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다.

- (a) 면허를 받은 자가 활어를 수출하기 위해서 각 운송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각 운송의 수출은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b) 전체적 운송이 허가에 포함된 설명에 따르는 경우

면허를 받은 자가 수출입과 관련하여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수입시 안전성 요건

장관은 활어에 관해 필요한 수입 안전성 요건을 특정할 수 있다.

장관은 경우에 따라 수입되는 활어의 안전 상태에 관하여 수입 안전성 요건을 국가별로 다양화할 수 있다.

장관은 특정된 기간 동안 수입 안전성 요건과 요건의 변경내용을 전부 등록하고 유지해야 하고, 등록내용은 공적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5) 어류 수출시 안전성 인증

수출하는 활어의 운송에 관하여 안전성 인증을 요구하는 자는 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장관은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운송 또는 샘플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안전성 인증의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안전성 인증서 또는 다른 형태의 문서나 라벨 변경

안전성 인증서나 활어의 수출입에 관한 공표양식(declaration form), 문서나 라벨을 변경하거나, 고의적으로 변경된 안전성 인증서, 공표서, 문서나 라벨을 이용한 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7) 면허 및 허가의 양도불가능성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의 이익 또는 그에게 부과된 어떠한 허가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는 위반한 경우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2 장 우리나라 관상어 산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조 항	규정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제명 및 시행일	동물 및 조류 보호법 제7장에 따른 ‘동물 및 조류(활어) 규칙’, 2011. 1. 시행
제2조	정의	안전성 인증, 면허, 활어, 허가 정의 * 활어(Live Fish) : 다양한 담수, 염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거북이, 수초 기타 해양생물
제3조	활어 수출입을 위한 면허	면허 신청 및 발급 요건
제4조	허가 없는 활어 수출입 금지	면허를 받은 자가 활어를 수출입하기 위해서 각 운송에 관해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을 것
제5조	어류 수출입을 위한 허가	제4조의 허가 신청 방법
제6조	어류 수입 면허를 받은 자의 문서제출 의무	
제7조	어류 수입시 안전성 요건	장관의 활어 수입시 안전성 요건 부과
제8조	어류 수출시 안전성 인증	활어 수출시 안전성 인증서 발급
제9조	안전성 인증서 변경	
제10조	잘못된 정보 제공 등	
제11조	면허 및 허가의 양도불가	

(3)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관상어산업 육성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관상어의 생태계에의 위험 및 동물 복지 차원에서 수출입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제정을 통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관상어 산업 육성 견인하는 동시에,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관상어산업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말레이시아

(1) 잠재가능성이 큰 산업- 관상어

관상어 산업은 말레이시아의 농업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수출에 근거한 부문은 연간 40%를 초과하여 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제3위의 관상어 생산국으로서 2000년 세계 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관상어 산업은 지난 10년(1990-2000) 동안 수출에 있어서 24% 성장을 경험하였다.

관상어에 대한 세계 시장은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연간 10-15%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시장의 규모는 2조 2천 4백억원(US dollar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열대어 교역의 98%를 차지한다. 전세계의 수입과 수출은 2000년에 각각 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1억 7천6백만 달러이고 중장기적으로는 2.5배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상어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써 1톤당 평균적으로 1백8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관상어의 식용물고기에 대한 가격 비율은 100:1이다. 관상어 생산자인 수출업자들은 초과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생산 주기와 40-50%의 이윤 마진이 관상어 산업에 또다른 매력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관상어는 주요한 산업이 되고 특히 대중적 다양성과 시장으로 인해 생산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4. 일 본

(1) 일본관상어진흥사업협동조합(Japan Ornamental Fish Association, jOFa)

1) 조합설립목적

일본관상어진흥사업협동조합은 관상어 및 관상어관련상품의 판매 및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이 되어 관상어사육의 진흥·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이다.

관상어 및 관련상품의 판매 및 유통업자는 보다 건강한 생체, 사육기구의 취급, 관리, 사육방법을 합리적으로 바르게 확산해야 하지만, 관상어업계에 있어서 각 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어병대책, 재래종보호활동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에 관한 준수의 홍보, 나아가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전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그 밖의 경우에도 대단히 불리한 조건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개개 기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법인조합을 설립해서 실시할 목적으로 일본관상어진흥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합리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활동을 추진해 가는 바이다.

2) 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소규모의 사업자로 한다.

- 관상어를 도매·소매하는 사업자
- 관상어의 사육관련용품을 도매, 소매를 하는 사업자
- 관상어를 양식하는 사업자
- 조합의 지구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업계획의 개요

① 관상어의 사육·관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업

관상어를 판매 및 관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등의 사육·관리기술의 수준에 따른 강습회 및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고, 관상어의 사육·관리사의 인정제도를 실시한다.

② 관상어 공동선언에 관한 사업

관상어 사육을 장려하기 위해, 포스터, 홈페이지 및 기관지 등에 게재한다. 또 관상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관상어 및 사육관련용품전을 개최하는 등으로 하여 홍보한다. 그 밖에 관상어의 사육방법, 물갈이, 적절한 오수의 배수장소 등을 게재한 소책자의 발행 E또는 관상어 캘린더를 제작하여 업계를 홍보한다.

③ 관상어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육관상어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의 방류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키울 수 없게 된 관상어를 거래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한다.

④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및 사육기술개선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세미나의 개최 등, 특정외래종법, 유전자조작 규제(카루타헤나) 등 관련법령의 책자를 작성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⑤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조 등에 대해 상호부조한다.

⑥ 그 밖의 사업

- ㉠ 우수한 관상어 종의 보존, 신종개발을 위한 조성
- ㉡ 관상어 사육기구, 사료, 의약품 등의 개량, 발명을 위한 조성
- ㉢ 관상어 및 사육기구의 수출입 홍보정보 교환에 관한 조성
- ㉣ 사업간의 친목조정을 위한 연락지도
- ㉤ 관상어진흥에 헌신하는 인재육성과 표창

4) 주요한 활동내용

-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조의 기증
- ② 워싱턴조약 준수 및 각종 규제에 관한 환경활동
- ③ 약사법 및 워싱턴조약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감시추진
- ④ 동물약품특례점포판매업⁴⁾의 허가취득 추진
- ⑤ 관상어사육사양성을 위한 매뉴얼 작성
- ⑥ 관상어사육관리사인정제도의 운영

(2) 관상어사육관리사

1) 의 의

관상어사육관리사란 일본관상어진흥사업협동조합의 관상어사육·관리기능에 관한 지식·기능심사의 합격자로 관상어 및 관상어의 관련용품의 판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 관상어사육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도/상담을 한다.

일본관상어진흥사업협동조합이 관상어사육/관리사의 심사를 하고, 합격자를 자격인정하여 등록후 「관상어사육·관리사인정서」를 교부한다.

2) 역 할

열대어, 금붕어, 해수어, 비단잉어 등의 관상어사육이 일반가정에 보급되어, “자연과의 친밀”, “마음의 안정”, “치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각 방면에서

4) 동물용의약품특례점포판매업이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및 판매업의 보급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품목을 지정하여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다(약사법 제83조의2의2). 현(縣)의 각 가축보건위생소장이 허가함.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높아지면 질 수록, 관상어의 사육·관리, 관련상품의 개발·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또 동시에 적확하게 조언·지도하는 인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것이 관상어사육·관리사이다. 관상어의 판매 및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또 관상어의 바른 판매 및 사육의 안내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3) 동물용의약품특례점포판매업

1) 동물용의약품특례점포판매업의 의의

이 판매업의 허가점포는 약제사나 등록판매자가 없는 점포로서 동물용의약품(지사가 지정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점포의 주변지구에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소비자가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된다.

2) 근거법령

약사법 제27조(점포판매품목), 제29조의3(점포에 게시), 제36조의6제2항(정보제공등), 제57조의2(구분진열)

동물용의약품등규제규칙 제98조(의약품의 판매업의 허가증의 게시), 제106조(점포에 게시), 제110조의7제2항(의약품의 정보제공 등)

※ 동물용의약품의 일반판매업(관리양제사를 배치할 것), 약종상판매업(적격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것), 특례판매업(학력, 자격의 조건은 없지만 판매품목의 제한있음)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

3) 점포의 요건

밝고 청결하여 의약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점포이며, 냉장보존해야 하는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의약품을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판매의약품의 종류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지정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중, 부작용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이나 사용하기 쉬운 것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

품목수는 가축용이나 개나 고양이, 조류, 관상어용 등 모두 최대 20-30품목 판매하는 의약품은 용기를 개봉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5) 의약품의 분류

동물용의약품에서는 지정의약품이라고 하는 분류가 설정되고 있고, 지정의약품은 판매에 종사하는 자가 약제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1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1에 따른 것이다.

6) 판매업의 허가의 종류

구 법	판매자격		개정후	판매자격	판매품목
일반판매업	약제사	→	점포판매업	약제사	모든 의약품
				등록판매자	지정의약품 이외
약종상판매업	약종상	→	도매판매업	약제사	모든 의약품
				등록판매자	지정의약품 이외
배치판매업	없음	→	배치판매업	약제사	일정한 품목
				등록판매자	지정의약품 이외의 일정한 품목
특례판매업	없음	→	동물용특례 점포판매업	없음	지정의약품 이외로서 지사가 지정한 것 (판매지정품목)

7) 점포에 게시

특례점포판매업자는 아래 사항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1	점포의 허가구분의 종류
2	점포판매업의 이름 또는 명칭
3	취급 의약품의 구분
4	상담시의 대응방법에 관한 해설
5	영업시간 및 영업시간외에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및 연락처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게시하는 것으로 함

※ 4, 5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장소에 게시

8) 판매품목의 제한

특례점포판매업에서는 취급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다음의 동물용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다.⁵⁾

1. 독극약, 요지시의약품 및 사용규제대상약 등
2. 판매지정품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
3. 인터넷을 사용한 광고, 판매

9) 판매품목의 변경

신청한 판매지정품목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지정품목의 변경(추가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또 취급품목을 폐지하는 경우도 변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허가사항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 허가관계사항

1. 판매업자(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업자(신청자)의 주소
3. 판매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점포의 명칭
5. 점포의 구조설비의 주요부분

5) 新潟県動物用医薬品販売業に関する規則 별표(제3조관계) 「동물용의약품특례점포판매업의 취급품목」 중에서 관상어용 약육제

약효 용도별 분류	유효성분	효능효과
관상어용 외피살균 소독제	아クリノール、アクリフラビン、イオウ、塩化ナトリウム、グアヤコール、クロルヘキシジン、スルファジメトキシシ、チオ硫酸ナトリウム、トリクロルホン、ニトロフラゾン、ニフルスチレン酸、マラカイトグリーン、メチレンブルー又はこれらに類似する薬理作用を有する成分(毒薬、劇薬及び医薬部外品に該当しない製剤に限る。)	鑑賞魚の外傷、エロモナス感染症(赤はん病、立りん病、尾腐れ病、穴あき病及びスレ病)、カラムナリス病(えら腐れ、尾腐れ及び口腐れ)その他の細菌性感染症、スレ、白点病、ミズカビ病等
관상어용 외부기생충 구제제	トリクロルホン(メトリホナート)又はこれに類似する薬理作用を有する成分(毒薬、劇薬及び医薬部外品に該当しない製剤に限る。)	イカリムシ症、アルグルス症(ウオジラミ症又はチョウ症)等

6. 점포에서의 겸영사업의 종류
7. 취급의약품의 품목
8. 점포의 휴업, 폐지 또는 휴업한 업무의 재개
점포의 주소변경(이전 등)은 신규신청
판매품목의 추가의 경우에는 사전신청
그 밖의 항목은 변경후 30일 이내

제 3 장 관상어 산업 육성 관련 우리나라 유사 법제 검토

제 1 절 관상어 산업 육성관련 국내 유사 법제 검토

1.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현재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업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시책의 마련’,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농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등이 있다.

-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육성 내지 기본계획, 실천계획
 - 육성심의회 내지 발전위원회의 설치
 -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경영개선지원
 -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물의 품질관리
 - 품질인증제도, 우대조치
- 산물의 유통관리
 - 생산·유통 지원, 우선구매
- 국제협력
 - 국제협력의 촉진

2. 산업의 진흥·발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요내용

그 밖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원양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이 산업의 진흥·발전 및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 법률이다.

- 발전계획 내지 종합계획
- 산업의 기반조성
 - 진흥정책심의위원회,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개발 장려, 표준화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지원센터 내지 진흥원의 설립·지정, 세제·금융지원
 - 창업지원
- 품질향상
 - 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3. 국내 관련 법률 중 관상어산업과 유사한 법제 검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률 중 특정 농림수산 생물에 관한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법률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말산업육성법이 그러하다. 다만, 낙농진흥법은 그 구조와 내용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조문의 내용을 간략히 비교하고자 한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육성법 시행 2011.9.10 법률 제10451호, 2011.3.9. 제정	기능성양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육성법 시행 2011.9.10 법률 제10451호, 2011.3.9. 제정	기능성양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말의 등록)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업무 수행)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6조(벌칙)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7조(과태료)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제20조(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22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23조(조세의 감면)	
	제2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제25조(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검사)	
	제27조(청문)	
	제2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과태료)	
	부칙	

4.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육성 내지 기본계획, 실천계획
 - 육성심의회 내지 발전위원회의 설치
 -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경영개선지원
 -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산물의 품질관리
 - 품질인증제도, 우대조치
- 산물의 유통관리
 - 생산·유통 지원, 우선구매
- 국제협력
 - 국제협력의 촉진
- 발전계획 내지 종합계획
- 산업의 기반조성
 - 진흥정책심의위원회,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전문인력의 양성
 - 연구개발 장려, 표준화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지원센터 내지 진흥원의 설립·지정, 세제·금융지원
 - 창업지원
- 품질향상
 - 우수제품의 지정
 -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 전문단지 내지 특구의 지정
 - 단지 내지 특구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평가

- 재정 및 기술지원 등
 - 산업(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해외 생산기지
 - 경영관련 정보의 등록

제 4 장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제정 도입 타당성 분석

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필요성 분석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
- 녹색생명산업,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서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부합
- 수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1) 관상어 기술개발 관련 과학자 입장 분석

- 국내외 관상어 산업 기반 취약 이유는 무엇보다 관상어 및 용품 산업 동향 분석이 미흡하고, 수산 정책이 어업 및 양식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
- 수산자원 부족현상으로 인해 관상어 양식업에 주력할 필요-> 연구 개발 수준은 세계 5위권이므로 연구개발 부문의 육성 및 지원이 절실함

관상어 R&D 기능 및 지원 강화 : 관상생물연구개발 T/F 구성, 활동중

관상어 품종개량 및 상품화, 관련 용품의 국산화 : 관상어 차별화 전략 수립(고급화 및 대중화), 고유종의 상품화 및 수출 품목 육성, 수출의존도가 높은 용품의 국산화 추진

관상어 정책 및 제도 보완

관상어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2) 관상어 시설 및 용품업자, 양식어가 입장 분석

1) 관상어 시설 및 용품업자 입장

- 수족관 운영시 전기 요금에 대해 농업용 요금 기준 적용 요구
- 전기요율적용 개선 필요 : 수족관은 생물을 판매하므로 24시간 전기 적용이 합당
- 수족관 관련 조달청 입찰에 수족관업 종사자, 관상어 관리사 자격자 명시 필요
- 어류의 손실을 고려하여 생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운용 필요
- 관상어 치료관련 약품 : 현재 수입이 되지 않고 약사법의 규제가 심함, 관상어 약품의 경우 관상어 관리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수족관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요망

- 수족관에서 판매, 충전할 수 있는 CO2 분배량 명문화 필요

2) 양식업자 입장

관상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양식업 입지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양식업 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①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양어장 시설 입지 지역은 하천부지, 유지, 저습지 등 비생산 녹지여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일반농지에서는 양식장 영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규정)

양어장과 관상어 양식장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상어양식 시설에 양어장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비생산 녹지는 전기 인입, 차량 입출입 등 관상어 양식 관리에 따른 생활여건 불편으로 양식업에 부적합한 지역인 경우가 많음

② 개선방안

일반 양어장과는 달리 비닐하우스 시설로 소규모(약 500m²) 양식하는 관상어 양식장에 대해서는 입지 여건에 따라 규제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하이면 시설이 가능토록 현행법 개정 요망

③ 관상어 수족관 관리자 제도의 신설

관상어 양식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관상어 수족관 관리 및 약품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국 관상어 협회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한 자들에게 관상어 수족관 관리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보다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고용 창출에도 기여)

(3) 관상어 수출입업자 입장 분석

1) 국내 관상어에 대한 해외 시장의 낮은 평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지역 저가 관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본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비단잉어 품종은 일본에서 육종된 품종으로 일본산과 큰 차이가 없으나,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일본 Koi 문화와 마케팅 파워에 눌려 인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

2)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

‘08년부터 관상어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중이지만, 규모가 작으며(연간 1억원) 양식어가에 한정되어 수출 촉진 효과가 낮은 편

* '11년의 경우 기존 관상어 수출 지원 예산마저 미 반영된 상황

주요 수입시장의 검역 및 통관 체계, 가격 동향 등 수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수출 어가·업체들의 해외 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3) 관상어 검역의 전문성 부족

그간 식용어종 중심의 검역 시스템 정비로 인해 장비·인력·조직 등 관상어 등 새로운 분야의 검역에 대해 Hardware 측면뿐 아니라 검역요원 전문성·경험 등 Software 역시 미숙한 상황

관상어 검역의 경우 식용과 달리 활어상태에서의 검역 및 검역 후 생존율 유지가 필수적이며, 식용에 비해 고가임을 고려할 때 검역 부담 증가

* 관상어 검역신청 금액은 중량(kg) 당 24.6\$로 식용에 비해 고가(식용 : kg 당 2.5\$)

제 5 장 법령(안)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제 1 절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1. 관상어산업 관련 법제의 검토

< 우리나라 현행 관상어 관련 주요 법령 현황 >

법령	주요내용
(1) 수산업법	
(2) 수산동물질병관리법 ※ 법률 제10888호 2011.7.22개정되어 2012.7.22시행예정인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 수산식물에 대해서도 동법이 적용됨 따라서, 현행 식물방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산식물은 시행예정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	제1장 정의 규정 제2장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제3장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3) 식물방역법	※ 수초의 경우에는 현재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3) 약사법	제85조 (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법 령	주요내용
	<p>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p> <p>④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44조에 도 불구하고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제50조제2항 단서 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 구입할 수 있 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 설자는 제44조에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 산생물용 의약품 판매할 수 있다.</p>
(4) 기르는어업육성법	<p>제 3 장 수산생물진료</p> <p>제14조 (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관리사가 아닌 자는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 <p>기르는어업 육성법 시행령</p> <p>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수산질병관 련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 양식어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 한 진료행위 3.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

법령	주요내용
	<p>할지역에서 행하는 무상진료행위</p> <p>4. 자기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p> <p>5.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식어가의 무상진료행위</p>
(5) 내수면어업법	<p>제3조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11조 (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17]</p> <p>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 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p>

법 령	주요내용
	<p>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0.5.17]</p> <p>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9 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p>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법 령	주요내용
	<p>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p> <p>제 9 조 (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p>[전문개정 2010.6.11]</p>
(6) 농지법시행령	<p>농지법</p> <p>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농지법 시행령</p> <p>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법 령	주요내용
	<p>4.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p> <p>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p> <p>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p> <p>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p> <p>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p> <p>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p> <p>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p> <p>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p> <p>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운동시설·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p> <p>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p>

법령	주요내용
	<p>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p> <p>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p> <p>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p> <p>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p> <p>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p> <p>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p> <p>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결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p>

법 령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p>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p>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법 령	주요내용
	<p>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7항제 1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8)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53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9> [전문개정 2006.8.16]</p> <p>제 2 조 (정의 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약품을 포함한다.
(9) 동물보호법	<p>제 1 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법 령	주요내용
	동물보호법시행령 제 2 조 (동물의 범위) 「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야생동·식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국제적멸종위기종 - 인공증식 - 생물자원
(11) 자연환경보전법	- 생물자원
(12) IATA LAR (국제항공운송협회 살아있는 동물의 항공운송규정)	- 포장방법, 포장용기의 라벨링 방법, 운송도중의 급이 및 수질관련 사항 - 관련 문건에 관한 사항
(13)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4) CBD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외래어종 확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15) Aquatic Animal Health Code (수생동물 건강규정)	국제수역사무국(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이 규정 - 어병진단 및 관리감독과 통지에 관한 사항 - 어병 발생시의 통제조치, 수출입절차 - 각 수생동물별 질병목록 - 수생동물 수입위험분석(Import Risk Analysis) 조치 - 어병확산 방지를 위한 어류건강증명서 제도

2. 관상어양식장 입지제한 관련 법률의 검토

관상어양식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상어의 생산을 위한 양식장 내지 양어장은 주로 도심에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입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곳은 관련 법률에 의해 양어장 내지 양식장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개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관상어양식업의 입지가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반드시 배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개별 법률을 검토하면서 입지제한의 완화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관상어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적 필요요건이 국내생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입지의 제한을 우선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법의 목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개발제한구역의 결정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시군구청장의 허가로 허용되는 행위제한 및 시설의 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공작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시군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로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를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1]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②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관상어양식장의 [별표 1]의 시설의 종류 중에서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설의 종류는 다시 세분하자면 다음의 목과 같다.

- 가. 동식물 관련시설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라. 근린생활시설
-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 바. 공중화장실

③ 동식물 관련시설 중 양어장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허가받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가) 축사(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 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북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창고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양어장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	평,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6) 콩나물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면적으로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콩나물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나물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7) 버섯 재배사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8) 퇴비사 및 발효 퇴비장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 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9) 육묘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1.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에서 가. 동식물관련시설에 양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가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관상어양어장이 별표 1. 5. 동물관련시설 4)양어장에 해당하는 것이 볼 경우에는 관상어 양어장은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설치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시군구에서 이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④ 양어장과 관상어양식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어장은 유지·하천·저습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상어양어장을 이 규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상어양식장은 내수면어업법 등에서 말하는 양식어업을 위한 양어장과는 속성을 달리한다. 말하자면, 관상어양어장은 노지에 양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

상어를 생산/사육하는 시설이다. 관상어양어장은 그 특성상 여울이나 연못(유지)에 입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저습지에도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관상어양어장이 원천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된다.

관상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관상어의 생산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참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자 한다.

4) 대안의 제시

양어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사육장’에 관한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육장은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관상어양어장은 그 특성상 양어장 보다는 오히려 5) 사육장 내지는 10) 온실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만을 말하자면, 제1안으로서 관상어양어장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상어사육장” 또는 “관상어양식장” 내지 “관상어양어장”과 같은 시설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제2안으로서 사육장에 관상어를 포함시켜서 관상어양어장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설하는 경우에는

5-1) 관상어사육장	<p>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〇〇조에 따른 관상어사육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관상어사육장에는 사육장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상어사육장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p> <p>다) 1)라)② 및 ③의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p>
-------------	--

관상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5) 사육장	<p>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관상어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	---

과 같이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p>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p> <p>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③·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p> <p>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p>
--	---

관상어양식장에 필요한 관리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 관리용 건축물 가)목의 단서에 “다만, ①·②·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상어양식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고 개정하고, ②에 “양어장, 관상어양식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시설양식인 관상어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3) 공동구관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p>	<p>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동구관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p>
<p>4) 공관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p>	<p>가) 공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수도권과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p>

또한, 시군구의 지역생산물로서 관상어가 판매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공관장 내지 물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상어 양식, 판매, 유통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계

위의 대안은 관상어양식장 내지 관상어사육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민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농지법

1) 법의 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지법 제1조).

2)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관상어양식장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면, 관상어양식장은 농지에 입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립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위 축사의 부속시설에 관해 해당 축사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자면 관상어양식장 내지 관상어양어장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볼 수 없게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상어양어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인 관상어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 제60조제1항,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및 ‘배출방지/억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준 등에 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규정되어 있는데, 관상어양어장은 1. 수산물 양식시설 중 나목과 다목에 해당된다.

[별표 19] <개정 2011.2.9>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 양식어장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p>6)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나. 양만장 및 일반 양어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p>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p>	<p>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p>

관상어양어장은 시설양식으로서 수조에 여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 규모도 소규모이며, 관상어양식장의 수질여과는 여과박테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에 의하자면, 관상어양어장으로부터 초래되는 수질오염은 크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양식어장의 경우에 적용하는 침전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상어양어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시설이나 조치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관상어양어장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관상어 질병 치료를 위한 약품 등에 관한 법률

(1) 약사법

1) 목 적

약사법의 목적은 제1조에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적용범위

① 약 사

위 목적의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제1호).

② 의약품·의약외품

○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다.

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3)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상 의약품),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이상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약사법에서는 규정하고, 따라서 약사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약사법에서는 제85조에서 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약사법 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따라서, 약사법상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한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본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셋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넷째,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기르는 어업육성법」은 법률 제1088호, 2011.7.21 수생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 폐지되어, 2012.7.22일 폐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약사에 관해서는 약사법이 적용되지만, 약사법 제85조의 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이 된다. 제85조의 특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① 목 적

이 규칙은「약사법」 제53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정 의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약품을 포함한다(동 규칙 제2조제1호).

양봉용 동물용의약품, “양잠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각각 꿀벌·누에 및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동 규칙 제2조제2호).

○ 동물용의약외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충청량제·욕용제(浴用劑)·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③ 동물약국의 개설

동물약국이란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한다(동 규칙 제2조 제8호). 여기서 “취급”이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물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서에 약사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3조제1항).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약국개설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3조제2항).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상어용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④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등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서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4호).

1.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 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나. 법 제36조에 따라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가목의 서류
- 다.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 라.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한다)
- 마. 사업계획서
- 바.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사.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

2.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

- 가.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나.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한다)
- 다. 사업계획서
- 라.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마.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품목신고서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 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로서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따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동조제2항).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각각 1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4. 내수면어업법상 관상어양식업

(1) 신고어업으로서의 관상어양식어업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면허어업(제6조), 허가어업(제9조)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1. 투망어업, 2. 어살어업, 3. 통발어업, 4. 외줄 낚시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사유수면에서 면허어업(제6조제1항 각 호 : 1. 양식어업, 2. 정치망어업, 3. 공동어업), 허가어업(제9조제1항 각 호 : 1. 자망어업, 2. 종묘채취어업, 3. 연승어업, 4. 패류채취어업, 5. 낚시업, 6. 낱장망어업, 7. 각망어업) 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내수면어업법상 공유수면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의 종류별 면허 등>

법령	각 호	어업의 종류	공유수면	사유수면
제6조	제1호	양식어업	면허 (제6조)	신고 (제11조제2항)
	제2호	정치망어업		
	제3호	공동어업		
제9조	제1호	자망어업	허가 (제9조)	신고 (제11조제2항)
	제2호	종묘채포어업		
	제3호	연승어업		
	제4호	패류채취어업		
	제5호	낙시업		
	제6호	낭장망어업		
	제7호	각망어업		
제11조 대통령령 제9조	제1호	투망어업	신고 (제11조제1항)	신고 (제11조제2항)
	제2호	어살어업		
	제3호	통발어업		
	제4호	외줄낙시어업		
	제5호	육상양식어업		
	제6호	관상어양식어업		

(2) 관상어양식업의 법적 성격

그러면, 현재 비단잉어, 금붕어, 열대어와 같은 관상어를 양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어업이라 할 수 있는 제6조제1호, 제11조제5호, 제11조제6호의 각 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양식어업은 법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면허어업의 명칭 등을 별표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양식어업에 대해서만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양식어업	조방(粗放) 양식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호수·늪·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가두리양식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하식양식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양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양식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양식어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어업의 종류	어업의 내용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법령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실내에서 수면적 16.5m²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용수면인 하천, 늪, 호수, 댐 등에서 관상어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전체적 법령의 내용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열대어양식의 경우를 들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물흐름에서 실내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1항의 경우에 관상어양식어업의 신고는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인소유의 토지에 자연적 내지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면에서 실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열대어양식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수면이건 사유수면이건 시설양식인 열대어양식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관상어양식어업이 들어간 것은 신고를 통해 어업자가 되면 수협으로부터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상어산업을 전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어업법의 틀을 벗어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별 설명자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의 발전기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상어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동법의 입법목적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동법은 관상어산업을 산업전반에 걸쳐 연관효과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시켜서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관상어가 제공하는 정서함양의 기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에서는 관상어산업의 발전기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는 동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집행시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보고 즐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 유통·판매, 수출입과 전시(展示), 체험, 연구 그 밖에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업(業)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이하 “관상어산업단지”라 한다)라 함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일정 규모를 갖춘 집단화된 지역을 말한다.

【해 설】

○ 관상어의 정의

관상어에 관해서는 우선,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를 예시한다.

둘째, 그 목적이 보고 즐기는 것(감상)에 있음을 밝혀서 식용 목적과는 구별되는 점을 밝힌다. 이 점에서 종래 식용의 목적으로 양식되거나 포획·채취되었던 수산동식물과는 구별된다. 수산동식물의 경우 생산량이 주로 무게를 단위로 표시되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관상어, 예를 들면 구피의 경우 무게는 마리당 약 2g에 불과하나 그 부가가치는 식용 어류보다 훨씬 높다.

셋째,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야생의 수산동식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대어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수조에서 사육하고, 수조내의 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히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연상태의 생태계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넷째, 관상어는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애완동물 중에서 육상에서 서식하는 생물과는 구별된다. 수계라는 점에서는 민물고기와 해수어를 포괄하는 것이고, 생물이라는 한 것은 동물과 식물(특히, 수초)을 포괄한다. 이는 관상어를 어류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섯째, 보고 즐기는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은 어류뿐만 아니라 갑각류(예, 새우, 가재, 게 등), 양서류, 파충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거나 국내에는 없는 종류가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일정한 종류를 규정하여 육성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관상어산업의 정의

관상어산업은 본문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1차 산업에서 서비스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으로서, 양식·생산과 같은 1차 산업, 유통·판매, 전시, 체험과 같은 3차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둔다.

○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의 정의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는 생산과 유통의 거리적 차이를 없애고, 산업의 연관효과를 높여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집단화된 지역을 말한다.

관상어산업 종사자의 의견 중에서 육성을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의견이 많이 제안된 것이기도 하다.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 설】

국가로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허가 등이나 보조금의 지급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 2 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 5 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의무 명시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그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책적 고려사항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상어산업의 육성 목표 및 현상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

제 6 조 (관상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3.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현재 관상어산업의 정책수립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담당향후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집행, 연구개발 사업, 우수사업자 인증사무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 9 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관상어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정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다.

제 9 조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관상어산업의 육성

제10조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어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6조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 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내산 관상어의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어(이하 “국내산 관상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산 관상어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2. 국내산 관상어의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3. 국내산 관상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해설】

국내산 관상어의 품종 개량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내수시장에서 우수하고 건강한 국내산 관상어의 점유율을 높여 수입대체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국내산 관상어 육성이 필요

【참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 국내산에 관한 용어정의

- 국내산에 관한 용어정의를 제2조에 포함하는 안이 있을 수 있음

- 제2조의 제7호를 신설하여 “국내산 관상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산”으로 표시된 관상어를 말한다.고 규정가능
- 다만, 동법상 국내산 관상어의 육성은 국내 관상어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정책수단이 이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
- 또한 기존 수입 관상어와 국내 양어장 관상어의 원산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용어의 정의는 총칙규정 이외의 부분에 둘 수도 있고, 비교적 간단한 용어는 해당 조문의 괄호로 표시하여 정의할 수도 있음
- 수입 관상어와 국내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관상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 있음
- 현재 수입산 관상어의 시중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장기간의 운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율이 높고 소비자가 구매후 조기에 폐사하는 경우가 다발하여 관상어 사육에 대한 흥미를 저감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와 그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홍보 및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상어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제 2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농어촌정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원예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3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과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산업 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관상어산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 단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관상어산업단지의 관상어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관상어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우수사업자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1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우수업체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물류창고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가 아닌 물류창고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1조의5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제21조의3

제21조의4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3. 제21조의3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금 및 기술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단체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사육, 생산, 유통, 수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
2. 관상어산업 관련 장비 및 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4. 관상어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상어사업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조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제21조의5

제21조의6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1조의5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5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2.5] 제21조의6

제24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관상어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관상어 품평회를 통해 입선된 관상어를 전시회에서 전시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품평회는 국내의 관상어 동호회나 양식업자의 품종 개량 및 건강하고 보기 좋은 관상어의 사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에 필요하다.

【참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품평회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김치산업 진흥법

제15조 (품평회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관상어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관상어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상어사업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방법,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참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2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포획·채취·양식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 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김치산업 진흥법

제19조 (김치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 (보고·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장 별 칙

제28조 (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 구 성

□ 5장 28개조와 부칙

-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제5조-제9조)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관상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장 관상어산업 육성(제10조-제25조)
 - 제10조(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 제11조(국내산 관상어의 육성)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지원)
 - 제13조(관상어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 제14조(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
 - 제1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제16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17조(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등)
 - 제18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제19조(우수사업자 인증)
 - 제20조(인증의 취소 등)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 제22조(자금 및 기술지원)

제 5 장 법령(안) 제시 및 제정 세부 추진 방안

- 제23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 제24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 제25조(관상어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4장 보칙(제26조-제27조)
 - 제26조(보고·검사)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5장 벌칙(제28조)
 - 제28조(과태료)

- 부 칙

법률 제 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의 발전기반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상어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여 농어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보고 즐기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 유통·판매, 수출입과 전시(展示), 체험, 연구 그 밖에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업(業)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이하 “관상어산업단지”라 한다)라 함은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일정 규모를 갖춘 집단화된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 2 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 5 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관상어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 3. 우수업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2.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관상어산업의 육성

제10조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내산 관상어의 육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어(이하 “국내산 관상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산 관상어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2. 국내산 관상어의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3. 국내산 관상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와 그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홍보 및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상어산업단지 지정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산업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관상어산업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단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관상어

산업단지의 관상어사업자에게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관상어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산업단지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단지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우수사업자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1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 3.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금 및 기술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사육, 생산, 유통, 수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
- 2. 관상어산업 관련 장비 및 시설의 보수·개조 또는 개량
-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 4. 관상어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상어사업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4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관상어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관상어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에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6조 (보고·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5 장 별 칙

제28조 (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